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6·25 전 쟁 전 후 적 지 역 에 서
활 동 한 비 정 규 군 공 로 자 보 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의 공로를 인정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의 범위,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로금 지급기준 및 방법, 지급신청 및 결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다.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안 제4조)

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지원단(안 제7조)

마. 공로금(안 제9조)

바. 공로금의 지급신청 / 지급결정(안 10조, 안 11조)

사.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안 제1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를 말한다.

1. 미군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
3. 법 제4조제1항의 위원회에서 인정한 조직 또는 부대

제3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

하는 사람

3. 6·25 전후 비정규군 연구 및 근무경력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공로금 감액에 관한 사항

2.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보상 등에 관련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증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법 제7조에 따른 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지원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지원단을 둔다.

②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지원단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③ 간사는 국방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국방부 공무원 및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로금) 공로금은 근무기간,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지급한다.

제10조(공로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의 공로금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로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만

해당한다) 1부

2. 별지 제4호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로금 수령위임장(이민·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 제1항의 공로금의 지급신청·수령에 있어서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인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해야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로금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로금 수령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읍·면·동장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공로금의 지급결정) 위원회가 공로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한다.

1. 비정규군 공로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당시주소
2.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3. 결정주문
4. 결정이유
5. 결정연월일

제12조(공로금 지급결정서 송달) 위원회가 공로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공로금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해야 한다.

제13조(재심의 신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공로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제출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및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공로금 지급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공로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공로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청구연월일

제15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공로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한국은행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시기) 공로금은 제14조 규정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7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1. 공로자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신청서류
6. 공로금의 기준
7. 심의·결정절차
8. 그 밖에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단체가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해당연도 정기총회 회의록(추모 등의 사업계획 포함)

제19조(민감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에 따른 비정규군 근로자 적용 제외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의 공로금 지급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 공로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 공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 공로금 환수에 관한 사무

제21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용)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년
비정규군 공로자	성명(한자) ()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① 비정규군 관련 주요내용	소속부대 / 군번(국군전환시)			군무기간	
	국방부 참전확인 번호			보훈처 참전등록 번호	
비 정 규 군 활 동 서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②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비정규군 공로자와의 관계			의	

본인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비정규군 근로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만 해당합니다)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금 수령위임장(이민·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 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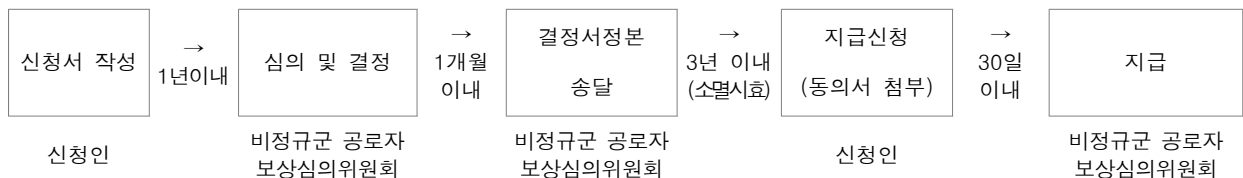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①란에는 비정규군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조직이나 부대의 명칭과 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될 시 군번, 국방부 참전확인 번호, 보훈처 참전등록 번호 등 주요 내용을 적되 추가 사항은 별지 3호 서식에 적습니다.
- 유족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②란에 적지 않고 별지 제5호서식에 모든 유족을 적어 첨부합니다.

처리 절차



비정규군 근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비정규군 근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혹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로금 지급신청서(유족용)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년
비정규군 공로자	성명(한자) ()		생년월일		사망일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① 비정규군 관련 주요내용	소속부대 / 군번(국군전환시)			근무기간	
	국방부 참전확인 번호			보훈처 참전등록 번호	
비 정 규 군 활 동 서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				
②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비정규군 공로자와의 관계 의				

본인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비정규군 공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만 해당합니다)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별지 제6호서식의 공로금 수령위임장(이민·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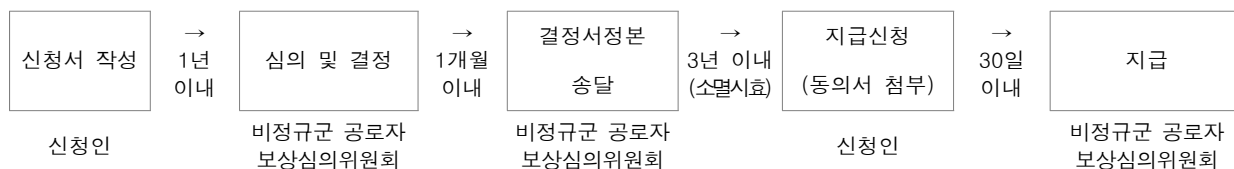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①란에는 비정규군 공로자가 소속되었던 조직이나 부대의 명칭과 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될 시 군번, 국방부 참전확인 번호, 보훈처 참전등록 번호 등 주요 내용을 적되 추가 사항은 별지 3호 서식에 적습니다.
- 유족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②란에 적지 않고 별지 제5호서식에 모든 유족을 적어 첨부합니다.

처리 절차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결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혹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군 활동서

근 무 기 간	
소 속 부 대	
증 빙 자 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자료
활 동 사 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족대표자선정서

※ 아래쪽의 유족대표자 선정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유 족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정규군 공로자와의 관계 의		

본인들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본인들의 공로금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1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2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3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4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5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의	

첨부서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공로금 신청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유족대표자 선정방법

- 유족 중 공로금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선행순위가 됩니다.
 -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행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행순위가 됩니다).
 -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로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 2명 이상 시 해당)

1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정규군 공로자와의 관계 의			
2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정규군 공로자와의 관계 의			
3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정규군 공로자와의 관계 의			
4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정규군 공로자와의 관계 의			
5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정규군 공로자와의 관계 의			
6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정규군 공로자와의 관계 의			
위 신청인의 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로금 수령위임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로금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확 인 서

상기 위임자는	[] 이 민
	[] 입 원
	[] 교도소수용
	[] 그 밖의 경우 ()

중에 있음을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의 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로금 지급결정서

(앞쪽)

접수번호	비보위	공로	제	호		
비정규군 공로자	성명	생년월일				
	당시주소					
신청인 (2명 이상은 별지에 작성)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비정규군 공로자와의 관계 의					
결정주문						
유족별	재산상속인					
지급액	금액(을)					

※ 공로금 명세 및 결정이유는 뒤쪽에 기재

년 월 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공로금 명 세	공 로 금	
	합 계	
	공 제 액	
	지 급 액	

결 정 이 유

[비정규군 공로자 인정 여부]

[지급액 산출]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비보위	보상	제	호
성명				
주소				

귀하의 공로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공로금 지급결정서와 같이 공로금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방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공로금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공로금의 청구 및 수령용)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

2)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신청인별 인감증명서 각 1부

3) 대리인이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400원 수입인지 첨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라.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2. 공로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1.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동의 및 청구서 용지 1부

3. 재심의 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인

※ 공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별첨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비보위	보상	제	호
성명				
주소				

1. 귀하의 공로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결정서正本과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의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결정서 正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결정서 正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 부 1. 공로금 지급결정서 正본 2부
2. 재심의 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재 심 의 신 청 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비정규군 공로자	성명	생년월일			
	본적	당시주소			
신청인 (2명 이상은 별지 제5호서식 사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비정규군 공로자와의 관계 의				
신청사유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비보위 공로 제 호 지급신청에 대한 년 월 일자 기각 또는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그 밖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동의 및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접수번호	비보위	공로	제 호
결정주문			
비정규군	성 명	생년월일	
공로자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2명 이상은 별지 제6호서식사용)	주 소		
	(전화번호:)		
	비정규군 공로자와의 관계 의		

- 신청인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아래의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 신청인은 그 공로금 결정액을 지급 받는 데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공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며,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부 3.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연 락 처	(02) 748 - 7171